

第253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10 號

國會事務處

2005年5月4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

1. 供託法 一部改正法律案
2. 監査院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國籍法中改正法律案
4. 集合建物の所有및管理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5. 通信秘密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안
7.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國防·軍事施設事業에 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9. 私立學校敎職員年金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10.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11.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 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2.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
13.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특별법안
14. 敎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15. 環境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
18.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19. 僱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
20.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障礙人僱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5. 투명사회협약 실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6. 야스쿠니신사의한국인합사취하및일본각료등의야스쿠니신사참배중단을촉구하는대한민국국회 결의안
27.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대안)
28.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패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9.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대안)

附議된案件

1. 供託法 一部改正法律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박세환·이인기·황우여·이해봉·김충환·안상수·박재완·유기준·박계동·유정복·김재원·정문헌·엄호성·이혜훈·배일도·홍창

선 · 이근식 의원 발의)	3
2. 監査院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3
3. 國籍法中改正法律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 · 이근현 · 배일도 · 황진하 · 유정복 · 박종근 · 김재경 · 박순자 · 이인기 · 이상득 · 김문수 · 이윤성 · 이시중 · 정성호 · 김정훈 · 임태희 · 이재오 · 박성범 · 박계동 · 서병수 · 송영선 · 이해봉 · 김석준 · 김재윤 · 장복심 · 권영세 · 정문헌 · 박창달 · 최병국 · 홍문표 · 정중복 · 황우여 · 고흥길 · 김맹곤 · 김재원 · 박재완 · 이명규 · 박혁규 의원 발의)	3
4. 集合建物の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5
5. 通信秘密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5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 · 권경석 · 권오을 · 김광원 · 김용갑 · 김재원 · 김정부 · 김태환 · 박홍수 · 신국환 · 안경률 · 이인기 · 정병국 · 최경환 의원 발의)	6
7.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7
8. 國防 · 軍事施設事業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9. 私立學校教職員年金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교육위원장 제출)	8
10.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8
11.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9
13.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 운영에관한특별법안(정부 제출)	9
14.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지병문 · 조배숙 · 구논희 · 백원우 · 복기왕 · 유기홍 · 이인영 · 정봉주 · 최재성 · 이낙연 · 최철국 · 이상열 · 양형일 · 최규성 · 김홍일 · 홍미영 · 강기정 · 김맹곤 · 이강래 · 이철우 · 최규식 · 김효석 · 김우남 · 김태홍 · 송영길 · 김동철 · 염동연 의원 발의)	9
15. 環境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
16.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4
17.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 김춘진 · 최재성 · 천정배 · 정두언 · 장복심 · 박순자 · 선병렬 · 강혜숙 · 김충환 · 백원우 · 이종걸 · 제종길 · 김형주 · 우원식 · 장향숙 · 주승용 · 염동연 · 우제창 · 유승희 · 김재홍 · 홍미영 · 최성 · 김한길 · 노현송 · 김애실 · 이경숙 · 이은영 · 신중식 · 이해훈 · 이해봉 · 이근식 · 손봉숙 · 김영춘 의원 발의)	16
18.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 김춘진 · 최재성 · 천정배 · 정두언 · 장복심 · 박세환 · 선병렬 · 강혜숙 · 김충환 · 백원우 · 이종걸 · 제종길 · 김형주 · 우원식 · 장향숙 · 주승용 · 염동연 · 우제창 · 유승희 · 김재홍 · 홍미영 · 최성 · 김한길 · 노현송 · 김애실 · 이경숙 · 이은영 · 신중식 · 안병엽 · 이해훈 · 이근식 · 손봉숙 · 박순자 · 김영춘 의원 발의)	16
19. 僱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이목희 · 김춘진 · 최재성 · 천정배 · 정두언 · 장복심 · 이해훈 · 선병렬 · 강혜숙 · 김충환 · 백원우 · 이종걸 · 제종길 · 김형주 · 우원식 · 장향숙 · 주승용 · 염동연 · 우제창 · 유승희 · 김재홍 · 홍미영 · 최성 · 김한길 · 노현송 · 김애실 · 이경숙 · 이은영 · 신중식 · 안병엽 · 이근식 · 손봉숙 의원 발의)	16
20.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박승환 · 유기준 · 이철우 · 김재원 · 이해봉 · 엄호성 · 김석준 · 이성권 · 김명주 · 정문헌 · 박형준 · 신중식 · 서병수 · 진수희 · 한화갑 · 고경화 · 원희룡 · 안상수 · 김효석 · 정두언 · 제종길 · 박계동 · 정병국 · 배일도 · 공성진 · 김형주 · 장복심 의원 발의)	16
21.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8
22. 障礙人僱傭促進進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 · 구논희 · 김영주 · 김형주 · 노영민 · 심재덕 · 우상호 · 유기홍 · 유승희 · 윤호중 · 이목희 · 이용희 · 이인영 ·	

이화영 · 장복심 · 전병헌 · 제종길 · 조정식 · 최규성 · 최재성 · 한병도 의원 발의)	18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9
24.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0
25. 투명사회협약 실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0
26. 야스쿠니신사의한국인합사취하및일본각료등의야스쿠니신사참배중단을촉구하는대한민국국회 결의안(강창일 · 강기정 · 강기갑 · 강혜숙 · 고진화 · 권영길 · 권오을 · 김기석 · 김동철 · 김맹곤 · 김영춘 · 김우남 · 김원웅 · 김재운 · 김재홍 · 김태홍 · 김홍일 · 김희선 · 남경필 · 노현송 · 노희찬 · 단병호 · 문병호 · 문학진 · 민병두 · 박기춘 · 박찬석 · 배일도 · 백원우 · 복기왕 · 서갑원 · 송영길 · 신기남 · 신중식 · 신학용 · 심상정 · 심재덕 · 안민석 · 양승조 · 양형일 · 염동연 · 오영식 · 우원식 · 우윤근 · 우제항 · 원혜영 · 원희룡 · 유기홍 · 유선호 · 유승희 · 유인태 · 유재건 · 이경숙 · 이기우 · 이목희 · 이상락 · 이상열 · 이시종 · 이영순 · 이인영 · 이호웅 · 이화영 · 임종석 · 임종인 · 장향숙 · 정성호 · 정청래 · 제종길 · 조정태 · 조배숙 · 조성래 · 조승수 · 천영세 · 최규식 · 최순영 · 최용규 · 최재성 · 현애자 · 홍미영 의원 발의)	20
27.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21
28.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2
29.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대안)(통일외교 통상위원장 제출)	23
○ 5분자유발언	24

(14시10분 개의)

- 의장 김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노재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供託法 一部改正法律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박세환 · 이인기 · 황우여 · 이해봉 · 김충환 · 안상수 · 박재완 · 유기준 · 박계동 · 유정복 · 김재원 · 정문헌 · 엄호성 · 이혜훈 · 배일도 · 홍창선 · 이근식 의원 발의)
2. 監査院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3. 國籍法中改正法律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홍준표 · 이근현 · 배일도 · 황진하 · 유정복 · 박종근 · 김재경 · 박순자 · 이인기 · 이상득 · 김문수 · 이윤성 · 이시종 · 정성호 · 김정훈 · 임태희 · 이재오 · 박성범 · 박계동 · 서병수 · 송영선 · 이해봉 · 김석준 · 김재운 · 장복심 · 권영세 · 정문헌 · 박창달 · 최병국 · 홍문표 · 정종복 · 황우여 · 고흥길 · 김맹곤 · 김재원 · 박재완 · 이명규 · 박혁규 의원 발의)

(14시13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항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국적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재경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입니다.

먼저 박세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외국인 등이 내국인을 상대로 공탁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 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에 외국인 관련 공탁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재외국민과 관련된 공탁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으므로 그 대상자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째 내국인이 외국인 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경우는 민법 제4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제공탁의 관할에 대한 특례이므로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기보다는 공탁법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하고 그 관할을 대법원 소재지 공탁소로 규정하는 등 법

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인이 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토대로 하나의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 등의 효율성 분석과 성과 평가와 관련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평가연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평가연구원은 국가평가체계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원의 감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감사 목적으로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 정보를 당해 감사 외의 목적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은 감사 권한의 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본인이나 또는 정보를 제출한 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설되는 평가연구원은 작은 정부의 취지에 맞게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출범하도록 하되, 향후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하고, 연구인력의 충원은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충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국적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첫째 이중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어서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후가 아니면 국적 이탈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성인 연령이 18세인 외국에서는 18세 이후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이후 3개월까지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고,

둘째 이중국적자의 병역기피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른바 원정출산이나 유학, 해외 근무 등의 형태로 직계존속이 일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함으로써 이중

국적자가 된 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후가 아니면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생한 사람에게도 개정안이 효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적용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供託法 一部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법제사법위원회)

監査院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國籍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사원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92인 중 찬성 183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01인 중 찬성 189인, 반대 6인, 기권 6인으로서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集合建物の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5. 通信秘密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4시22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4항 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정성호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주·동두천 출신 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제안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체계 및 자구 심사를 하던 중 이 법률안(대안)의 부칙 제4조가 법률 제 3725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 6조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률 제3725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서는 주택법을 배제하고 있어 법률상 모순과 충돌이라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법체계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려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대안)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법률체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3725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형일 의원 등 32인, 권영세 의원 등 16인, 진영 의원 등 41인, 노회찬 의원 등 17인이 각각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토대로 하나의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 대책으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그 통제 수준을 격상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제한조치에 버금갈 정도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의 요청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긴급한 사유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반드시 이를 통지하도록 하되 그 기한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부제기 등의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반면에 정보수사기관의 장에 의하여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외부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바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통신제한조치의 예에 따라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集合建物の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通信秘密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5인 중 찬성 206인, 반대 7인, 기권 2인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5인 중 찬성 215인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이상배 의원 대표발의)(이상배·권경석·권오을·김광원·김용갑·김제원·김정부·김태환·박홍수·신국환·안경률·이인기·정병국·최경환 의원 발의)

(14시30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6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성조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상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77년과 1992년 2회에 걸쳐 동 법안을 시행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주가 많이 있어 이를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둘째,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건물과 광역시와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개별 공시지가가 1평방미터당 6만 500원 이하 전 토지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하였으며,

셋째, 이 법에 의한 등기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에 일정 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와 당해 부동산의 대장 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고,

넷째, 보증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장 소관청이 보증인에 대하여 허위 보증에 따른 처벌 고지와 함께 보증 취지를 직접 확인한 다음 현장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허위 보증에 대하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이 법의 시행일을 2006년 1월 1일로 하고 유효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함과 동시에 이 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5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8인, 기권 3인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8. 國防·軍事施設事業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시35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7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박세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박세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박세환 의원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권영세 의원 등 26인이 또 고진화 의원 등 10인이 그리고 전병현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상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던 것을 경고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여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는 등 중대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그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보다 하향조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병역의무 이행 후에 채용시험 시 응시상한연령 연장제도 등의 채용 시 우대제도와 관련하여 수혜자를 현역복무자 및 행정관서 근무 공익근무요원에서 그 외의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현행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해서 그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그 범주를 둘러싼 용어 해석상의 혼란을 일소하고,

둘째,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민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국방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國防·軍事施設事業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병역법 일부개정법

를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1인, 기권 3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3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1인, 기권 4인으로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私立學校教職員年金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교육위원장 제출)

(14시41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9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이군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군현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소속 이군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김영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간병이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립학교 교직원이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적용범위의 특례에 법률에 의하여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그리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私立學校教職員年金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교육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1인 중 찬성 206인, 반대 12인, 기권 3인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4시44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0항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주호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이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못한 자 중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구제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특별 채용 대상자를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둘째, 시·도교육감은 병역의무 이행 관련 미임용자가 특별 채용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미임용 등록자로 등록·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의 특별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특별채용심의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넷째, 임용권자는 미임용 등록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특별 채용하도록 하며 부진공 과정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진공 과정을 이수한 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교육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9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정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3.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정부 제출)

14.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지병문·조배숙·구논희·백원우·복기왕·유기홍·이인영·정봉주·최재성·이낙연·최철국·이상열·양형일·최규성·김홍일·홍미영·강기정·김맹곤·이장래·이철우·최규식·김효석·김우남·김태홍·송영길·김동철·염동연 의원 발의)

(14시49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1항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의사일정 제14항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최재성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최재성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최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임용 등록자가 중등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전형 을 거치도록 하고,

둘째, 공개전형에서 선발하는 미임용 등록자의 수를 2006학년도에 500명, 2007학년도에 500명으로 하여 총 1000명으로 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립의 중등교원의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임용권자는 미임용 등록자들의 부진공 이수를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넷째, 미임용 등록자에 대하여 중등교원으로서의 임용을 위한 공개전형과 교육대학에의 편입학을 위한 특별전형에 중복 응시하는 것을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동북아 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는 내국인의 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외국교육기관이 그 잉여금을 당해 외국학교법인의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외국교육기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공영

형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도 그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 관련한 일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 국립대학의 장 임용 추천을 위한 후보자를 대학 내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과열된 선거운동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인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에서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당해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준용하여 적정한 선거관리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에 있어서 일반 선거와 대학의 장 임용 추천을 위한 선거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선거운동의 제한 및 벌칙 등을 동 법안에서 직접 규정하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학의 장 추천이 지연됨으로써 대학의 장이 장기간 임용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임기만료 3개월 이내에 당해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있어 “당해 대학 구성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 선정”을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수정하였고, 넷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관리 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에 관한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은 의장님께

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되었음을 다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먼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4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영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의원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순영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본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참으로 비통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까지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특별법안에 대한 수많은 반대여론, 국회에서도 공방에, 정부의

거짓 보고 등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한 논란과 공방 과정을 거쳐 왔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부와 심사, 교육위 전체회의의 회부와 의결의 전 과정이 지난 4월 28일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되었습니다. 한국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을 단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법안의 주요 쟁점인 내국인 입학문제는 그동안 수많은 국회 논의를 거쳐 왔습니다. 민주노동당과 교육 사회단체는 내국인 입학허용이 교육 개방과 다름 아니며 국내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정된 법안은 국회 교육위에서 가장 쟁점이 되어 왔던 외국 교육기관 내 내국인 입학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에게 내국인 입학비율 결정 권한을 내어 줌으로써 스스로 국회의 입법 권한을 포기하였습니다. 결국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정부의 입맛대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본 법안이 결국 통과된다면 과연 우리들 자신을 국민들이 부여해 준 고유한 입법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 부를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국인 입학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굶주린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국인 입학비율 50%를 줄곧 요구해 왔던 정부에게 내국인 입학비율 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외국 교육기관은 외국인 투자자의 생활여건 개선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리추구형 외국계 귀족사립학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내국인과 한국계 외국인 등으로 채워질 학교에 외국인 투자자의 자녀들은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이는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외국 교육기관입니다. 과연 우리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외국 교육자본과 일부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부입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입니까?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외국계 귀족사립학교를 다니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강하게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국 교육기관은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외국 교육기관은 1년에 수천만 원의 학비를 낼 수 있는 경

재능력이 있는 부유층에게만 허용되는 학교입니다. 수천만 원씩 들여서 자녀를 외국 교육기관에 보낼 수 있는 학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해외유학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외국 교육기관을 거점으로 하여 외국유학에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공교육에 매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법안에 의한 학교들은 각종 안전장치들이나 규제가 없습니다. 결국 국내 사립학교들이 외국 교육기관과 동등한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면서 결국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 해제를 요구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교육 공공성이라는 수사 아래서 공교육은 그들만을 위한 귀족교육에 깔려 신음하는 나머지 교육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수월성교육, 영재교육, 특목고 확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이어 이제 외국 교육기관까지 들여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평준화 해제로 갈 것이 뻔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에 일반 국민들의 교육 기본권은 철저히 유린당하고 가장 공공적이어야 할 교육이 오히려 빈곤의 견고한 사슬이 되어 가고 말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교육개방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WTO 서비스부분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5월 말까지 2차 양허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개방과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개별적이라고 자꾸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는 분명 교육개방의 한 형태입니다.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빗장을 열어 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는 사실상 국내 공교육을 외국 교육자본에 다 내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교육과 문화는 단순한 서비스 협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등의 국제단체는 국가의 고유한 주권정책으로서의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교육주권을 송두리째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외국 교육기관에서 주당 한국어 1시간, 한국사 1시간을 이수했다고 국내 학력으로 인정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 교육주권은, 우리 국민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자유구역에 정히 외국인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면 현행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형태입니다. 불 보듯 뻔한 문제들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17대 국회는 우리 교육을 외국자본에 팔아넘긴 장본인으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져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육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에게 고유한 입법권을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정봉주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의원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노원갑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 5~6개월 동안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견해를 표명해 왔습니다. 법안의 내용이 상당 부분 수정되고 일부 보완된 부분이 있기에 원래의 안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이송된 것은 지난해 6월이었으니 근 1년 만에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특히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를 하면서 토론과 연구를 거쳐 오늘의 수정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기본 목적은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투자자들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원안은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뿐이었고 오히려 해외 교육자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학교를 설립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것이 더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의 자녀를 위한 우수한 교육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떠

한 조항으로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 교육기관에는 국내 내국인 학생들만 가득 차고 외국 투자자들은 이 학교를 외면하고 중국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이 실패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여 동안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숙의를 거듭한 끝에 부분적으로 수정된 법안이 상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법안을 조정하기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서 국내의 교육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암참(AMCHAM), 즉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장단 그리고 현재 국내에 있는 SFS나 DCIS 등 외국인 학교의 교장단들과 오랜 기간 함께 숙의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기본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되, 해외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교육자본이 투자하고 설립하는 학교는 불가피하게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지타산을 염려하다 보면 수가 제한된 외국인 학생들보다는 내국인 입학 여부와 그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외 투자자들은 이런 학교를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이 우려의 핵심이었습니다.

국제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이로 인한 경제특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목표이기 때문에 국제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즉,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수지타산으로부터 자유로운 비영리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이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정신이고 내용입니다.

법안 제15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설립·운영하는 외국 교육기관을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자유구역

의 성공을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하고 또 다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외국인의 교육자본이 투자한 학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라고 하는 2개 유형의 학교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즉, 2개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이들을 경쟁시킴으로써 국내 학생들의 입학 여부나 비율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원래의 취지인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 법안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의 하나인 내국인 입학 비율에 대한 결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습니다. 이 법안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외국인 교육기관과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쟁점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이 법안은 일견 완성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닦이지 않은 상황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절박한 국가적 과제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 내국인 입학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은 불가피한 현실의 반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 미완성이라고 하는 지적과 비판 속에서도 여야가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 소속의 여야 위원은 이 미완성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숙의에 숙의를 거듭했습니다.

내국인 입학 허용 여부와 입학 비율을 정하는 것은 학교의 성공, 나아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 직결된 핵심적 사항입니다.

현재 국내 외국인학교장들 중 국제 수준의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교장단들은 한결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 국제 수준의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입학을 일체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규정하고 있는 모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제22조 제5항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내국인의 입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경제자유구역의 동반 성공을 위해서는

내국인 입학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다는 현실과 모범에 배치된다는 법리 논리 사이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대체토론 끝에 내국인 입학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완전 합의된 내용은 아니지만 내국인 입학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첫째,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은 거의 허용하지 않는 수준으로 상한선을 두면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둘째, 외국교육자본이 투자한 학교는 내국인 입학 허용의 상한선을 10% 선으로 한다’,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가 경제특구로 이전할 경우 내국인 입학 허용을 거의 불허하는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국인 입학 허용의 폭이 넓어질 경우, 이 학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몇 년 전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입학 정원 30명 남짓했을 때 전국의 모든 학원들이 민족사관고등학교 입학반을 신설하고 사교육의 열풍이 불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국인 입학 허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현실적 주장도 있습니다.

안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낼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경제자유구역에는 투자자들의 발길도 끊어지게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실수한 정책 하나로 인해 경제특구는 해외 투자자들이 하나도 없는 유명 도시로 변모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교육위에서 합의한 이 법안은 국가 경제의 활로 모색이라고 하는 현실의 절박성을 담고 있는 것이기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깊은 관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제 성공을 위해 천만번 양보한 교육위 위원들의 충심을 이해해 주시고 본 안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경제특구의 개발 모델에는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특구의 벤치마킹 타깃이 되고 있는 상해포동지구는 개발을 함에 있어서 외국 자본들에게 50년 장기 임대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토지를 매립하고 일시에 외국 자본에게 매각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토지가 상승한 상황이

되어 있으며 국가 경제를 위한 개발보다는 지가 상승을 위한 투기자본이 유입되거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경제 성공을 위해 천만번 교육 상황을 양보한 교육위 위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고 있는 개발 모델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쓴 교육위 소속 위원님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 경제의 미래라고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5인 중 찬성 196인, 반대 32인, 기권 7인으로서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56인, 기권 5인으로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環境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6.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5시21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15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다중이용 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우원식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우원식**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노원을구의 우원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교홍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대안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 결정 이후 환경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에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여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환경보전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전환경성 검토 시 당해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대안의 설정·분석 등 평가를 통하여 환경 측면의 적정성·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침으로써 전략환경 평가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사업규모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며, 협의기관의 장은 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사업허가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원기 의장, 박희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맹곤 의원, 이근현 의원, 이호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의무적으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시설주(施設主)의 부담이 크므로 기존의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하여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 적용 대상 중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도상가, 그리고 공동주택의 범위에 기숙사를 각각 추가하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環境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부의장 박희태** 우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

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4인, 만장일치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반대 2인으로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

표발의)(이목희 · 김춘진 · 최재성 · 천정배 · 정두언 · 장복심 · 박순자 · 선병렬 · 강혜숙 · 김충환 · 백원우 · 이종걸 · 제종길 · 김형주 · 우원식 · 장향숙 · 주승용 · 염동연 · 우제창 · 유승희 · 김재홍 · 홍미영 · 최성 · 김한길 · 노현송 · 김애실 · 이경숙 · 이은영 · 신중식 · 이혜훈 · 이해봉 · 이근식 · 손봉숙 · 김영춘 의원 발의)

18.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

원 대표발의)(이목희 · 김춘진 · 최재성 · 천정배 · 정두언 · 장복심 · 박세환 · 선병렬 · 강혜숙 · 김충환 · 백원우 · 이종걸 · 제종길 · 김형주 · 우원식 · 장향숙 · 주승용 · 염동연 · 우제창 · 유승희 · 김재홍 · 홍미영 · 최성 · 김한길 · 노현송 · 김애실 · 이경숙 · 이은영 · 신중식 · 안병엽 · 이혜훈 · 이근식 · 손봉숙 · 박순자 · 김영춘 의원 발의)

19. 僱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

표발의)(이목희 · 김춘진 · 최재성 · 천정배 · 정두언 · 장복심 · 이해훈 · 선병렬 · 강혜숙 · 김충환 · 백원우 · 이종걸 · 제종길 · 김형주 · 우원식 · 장향숙 · 주승용 · 염동연 · 우제창 · 유승희 · 김재홍 · 홍미영 · 최성 · 김한길 · 노현송 · 김애실 · 이경숙 · 이은영 · 신중식 · 안병엽 · 이근식 · 손봉숙 의원 발의)

20.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박승환 · 유기준 · 이철우 · 김재원 · 이해봉 · 엄호성 · 김석준 · 이성권 · 김명주 · 정문헌 · 박형준 · 신중식 · 서병수 · 진수희 · 한화갑 · 고경화 · 원희룡 · 안상수 · 김효석 · 정두언 · 제종길 · 박계동 · 정병국 · 배일도 · 공성진 · 김형주 · 장복심 의원 발의)

(15시28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존경하는 이목희 의원 나오셔서 이 4건에 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이목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이목희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60일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여성 고용의 기피,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계약해지, 여성 고용의 축소, 모성 보호에 있어서의 문제 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한 유산·사산한 경우 법률에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장에서 유산·사산 휴가의 활용이 저조하며, 이에 따라 모성 보호에 적신호가 되고 있는 실정인어서,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휴가를 청구하는 때에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명문화하고, 산전·후휴가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때에는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전·후 휴가에 유산·사산 휴가가 포함되도

록 명문화하였으며, 국가가 지급한 산전·후 휴가 급여액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 등 산전·후휴가 급여의 사회분담 확대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산전·후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은 여성근로자들이 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휴가 기간 동안에도 급여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여성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고, 산전·후 휴가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전·후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하여 통상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되, 고용보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산전·후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에 한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겠습니다.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및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경우 그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재취업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월로 단축하고,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월의 재취업 제한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고용허가 절차도 다소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법률 개정에 따른 내국인 고용기회의 침해 및 정주화 등을 고려하여 개정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입국 시의 적용 제외 규정을 축소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

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雇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이목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0인 전원 찬성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7인 만장일치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19인 중 찬성 219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전

원 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다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19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2. 障 碍 人 雇 傭 促 進 及 職 業 再 活 法 中 改 正 法 律 案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구노희·김영주·김형주·노영민·심재덕·우상호·유기홍·유승희·윤호중·이목희·이용희·이인영·이화영·장복심·전병현·제종길·조정식·최규성·최재성·한병도 의원 발의)

(15시36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존경하는 조정식 의원 나오셔서 2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조정식**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단병호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대안은 1986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변화된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적용시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기준으로 추가하였고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을 폐지하는 한편, 양성훈련생과 수습근로자를 감액적용체도로 통합하였으며, 그간 적용제외대상이었던 감시단속근로자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못할 경우 직상수급인이 당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최저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부문 장애인고용의 적용 제외를 대폭 축소하여 국가의 장애인고용의 책임과 선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의 적용 제외를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축소하며 일부 민간업종의 적용제외대상을 폐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부문 고용의무 적용 제외사유를 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장애인이 강제력 행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인식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는 한편, 민간부문 업종별 적용 제외율 폐지에

따라 급격한 시행으로 인한 기업체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업종별 적용 제외율이 폐지되는 업종에 한해 5년간 부담금 감면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전원 찬성으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기권 3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출)

(15시43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존경하는 안홍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안홍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마산을 출신 안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국민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정책으로서 건교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둘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내구수명을 감안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은 국민의 경제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점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설교통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안홍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0인, 반대 13인, 기권 3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25. 투명사회협약 실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5시47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투명사회협약 실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존경하는 임태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임태희 운영위원회 임태희 의원입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명사회협약 실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배경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고령화 진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병행하여 곧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투명사회협약 실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5년 3월 9일 공공부문, 정치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등 사회주체의 대표들이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투명사회협약의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반부패투명사회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 위원수는 20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동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

안한 대로 각각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명사회협약 실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운영위원장)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박희태 임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220인 전원 찬성으로서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투명사회협약 실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신 분은 나중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봉숙 의원이시지요? 시간을 잘 지켜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늦은 사람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투명사회협약 실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야스쿠니신사의한국인합사취하및일본각료등 의야스쿠니신사참배중단을촉구하는대한민국 국회결의안(강창일·강기정·강기갑·강혜숙·고진화·권영길·권오을·김기석·김동철·김맹곤·김영춘·김우남·김원웅·김재윤·김재홍·김태홍·김홍일·김희선·남경

필 · 노현송 · 노회찬 · 단병호 · 문병호 · 문학진 · 민병두 · 박기춘 · 박찬석 · 배일도 · 백원우 · 복기왕 · 서갑원 · 송영길 · 신기남 · 신중식 · 신학용 · 심상정 · 심재덕 · 안민석 · 양승조 · 양형일 · 염동연 · 오영식 · 우원식 · 우윤근 · 우제항 · 원혜영 · 원희룡 · 유기홍 · 유선호 · 유승희 · 유인태 · 유재건 · 이경숙 · 이기우 · 이목희 · 이상락 · 이상열 · 이시중 · 이영순 · 이인영 · 이호용 · 이화영 · 임종석 · 임종인 · 장항숙 · 정성호 · 정청래 · 제종길 · 조정태 · 조배숙 · 조성래 · 조승수 · 천영세 · 최규식 · 최순영 · 최용규 · 최재성 · 현애자 · 홍미영 의원 발의)

(15시51분)

○**부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야스쿠니신사의한국인합사취하및일본각료등의야스쿠니신사참배중단을촉구하는대한민국국회결의안을상정합니다.

존경하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화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부의장, 김원기 의장과 사회교대)

○**통일외교통상위원장대리 이화영**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화영 의원입니다.

야스쿠니신사의한국인합사취하및일본각료등의야스쿠니신사참배중단을촉구하는대한민국국회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79인의 발의로 제안된 이번 결의안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 청산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등을 위해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 합사를 취하하고 일본 총리와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단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의안의 제명을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 합사취하 및 일본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단 촉구결의안으로 하고 내용도 상당 부분을 결의안의 형식에 부합되도록 수정하여 2005년 5월 3일 제253회 국회 제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침략기에 강제로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들이 일본 측에 의해 유족들에 대한 통보나 동의 없이 침략전쟁의 주모자와 함께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는 사실과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의 연례적인 야스

쿠니신사 참배 행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나타내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인 희생자들이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을 기리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관념과 민족정신에 비취볼 때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유족들의 뜻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합사 취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고이즈미 총리와 각료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일본이 진정으로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나타내는 행위인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야스쿠니신사의한국인합사취하및일본각료등의야스쿠니신사참배중단을촉구하는대한민국국회결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야스쿠니신사의한국인합사취하및일본각료등의야스쿠니신사참배중단을촉구하는대한민국국회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8인 중 찬성 225인, 기권 3인으로서 야스쿠니신사의한국인합사취하및일본각료등의야스쿠니신사참배중단을촉구하는대한민국국회결의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5시56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7항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영숙 교육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사교과의 필수과목 채택 등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과 박성범 의원이 발의한 학교교육 및 국가고시 등에서의 국사과목 비중 제고 촉구결의안 2건의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고구려사 편입 시도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중국과 일본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심각한 훼손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사교육의 비중이 저하되고 공무원의 임용시험 등에서조차 국사과목이 점차 폐지될 예정으로 있는 바 이에 정부가 국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사 연구활동을 진흥시킴과 동시에 청소년들에 대한 국사교육 강화,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및 시험에서 국사가 필수과목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대안)

(교육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김원기 그러면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1인 중 찬성 229인, 기권 2인으로서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대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으로 각각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6시00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8항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김영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대리 김영덕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김영덕 의원입니다.

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12일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는 후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바 이는 정부가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다고 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개 나라와 부가합의를 한 것이 밝혀졌고, 협상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솔한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 9개국 모두와의 협상 전문이 공개된다면 더 큰 파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이면합의의 논란뿐만 아니라 최소시장접근물량 약 100% 증가, 소비자 시판 30% 허용, 10년 후 관세화 전면개방 등 쌀 한 품목에 대한 협상내용 자체만으로도 한국 농업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과정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여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사의 범위는 쌀 협상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기간은 2005년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35일간으로 하되 청문회는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의 방법과 조사대상 기관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의장 김원기 그러면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6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6인, 기권 12인으로서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9.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대안)(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16시04분)

○의장 김원기 의사일정 제29항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外交通商委員長代理 朴啓東 본적이 독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박계동 의원입니다.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최성 의원 등 33인, 강재섭 의원 등 118인, 천영세 의원 등 10인, 문희상 의원 등 83인, 신국환 의원 등 22인이 각각 제안한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 수호 관련 5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안된 각 결의안은 독도영유

권과 관련하여 일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도발적인 행위들에 대하여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안취지가 동일한 점등을 감안하였으며, 특히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결의안이 제안된 바 있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05년 5월 3일 제253회 국회 제5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결의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 정치인들의 반역사적 망언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그리고 독도를 대한민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왜곡 기술하도록 교과서 검정 과정에 일본 정부가 개입한 사실 등은 일본국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제국주의적 망령에 젖어 계획적·의도적으로 영토침탈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도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국 일부 국민 및 지리 교과서의 왜곡된 독도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에 의한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행위들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국가 영토를 수호한다는 단호한 의지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넷째,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우정의 해를 통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거듭나고자 하는 양국 간의 관계에 더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선린우호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대안)

(통일의교통상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원기 그러면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30인으로서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

(16시09분)

○의장 김원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전주 완산을 출신 이광철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토로를 아십니까?

우토로는 일본 교토부 우지시에 있는 제일동포 정용인 마을의 이름입니다. 우토로는 1941년 일본이 교토에 군사비행장을 만들면서 조선인을 강제징용하였거나 징용을 면제해 주는 조건이어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함바에서 숙식하며 거주하게 된 마을의 이름입니다.

현재 우토로에는 약 6500평의 토지에 65세대, 200여 명의 제일동포가 살고 있으며 80세 이상의 고령자만도 20여 명이며 죽기 전에 고향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며 이들의 고향은 대부분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입니다.

지금 우토로에는 60여년 전 조선인 노동자들이 함께 함숙했던 함바가 부서진 형태로 남아있기도 하고 며칠마다 한 명씩 죽어가던 비행장 공사장은 철조망에 둘러싸여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용당해 온 조선인 부락에는 1980년대 후반에야 수도관이 깔렸고 배수시설은 아직도 안 돼 있어 집들 사이에는 구정물이 흐르고 장마 때

가 되면 1년에 두어 차례 구정물이 넘쳐 집으로 몰려들곤 합니다.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6500평, 우토로의 토지소유권을 가졌던 일본 군수업체 닛산은 20여년 전 우토로의 주민들 모르게 부동산회사에 토지소유권을 넘겼고 최근에는 개인에게 우토로의 토지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17년 동안 땅주인은 나가라, 우토로 주민들은 못 나간다고 맞섰으나 일본의 최종 재판에서 철거명령을 내린 지도 5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으로 징용되어 살아온 지 60여년! 오로지 우토로에서만 살아온 우리 동포들은 언제 강제철거를 당할지 몰라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온 것이 17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무슨 연유로 우리 동포가 우토로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과거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전쟁 후 40여 년 동안 어떠한 보상도 없이 줄곧 방치된 우토로 주민들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것은 토지소유권 재판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일본의 사법은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토로에 사는 주민들 다수는 과거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우토로에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그 자손들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동포 1세대 대부분이 80세가 넘는 고령자이고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않습니다. 전후 수십년간을 우토로에서 살아오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날을 보지 못하고 많은 1세대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우토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대한민국의 지원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토로에 있는 제일동포들에게 조국은 없습니까? 그들에겐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동포도 없습니까? 우토로의 동포들에게 조국 대한민국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토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정부가 제일 조선인에 대해 전후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제일 조선인에 대한 전후배상과 함께 우토로 제일 조선인 마을이 앞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토로 주민들의 생활권과 거주권을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요구해야 합니다.

우토로의 대다수 동포들은 토지를 구입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 토지소유자가 제시하는 가격은 주민들에게 매우 벽찬 가격입니다. 우토로 주민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7년간 우토로를 그들의 힘으로만 지켜온 우토로 동포들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와 국민들이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평생을 우토로에서만 살아온 우리 동포들이 강제철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김재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의원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남제주군 출신 열린우리당 김재윤입니다.

저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과 연계되어 각 지자체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썩대도 삼밭에 가면 곧아진다고 해서 ‘삼밭에 썩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환경과 여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지역에 올바르게 자리매김되어 이전기관도 활성화되고 동시에 지역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삼밭에 썩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 공공기관과 지역과의 연관성, 유기성, 유치 시 시너지효과 등이 공공기관 이전 지역배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 2일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국가균형발전에 기대를 거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대규모 공공기관 10개를 먼저 정하고 수도권과 대전·충남·제주를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에 대규모 공공기관 1개씩 일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

다. 공공기관의 규모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과 이전 공공기관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는 10명 기준의 대규모의 공관 1개가 배치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그 특성에 따라서 350명 기준의 중규모의 공공기관 3개가 배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계량적인 수치와 기계적이고 작위적인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각 지역에 배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지역에도, 공공기관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도별 배치 방식에서 대규모 공공기관 10개를 정해서 배치하는 방안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중소규모 구분 없이 지역산업 특성과 기관과의 기능성, 연계성, 파급효과 등 면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서 충청도·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다 배치돼 있는데 유독 제주도만 배제된 까닭은 무엇이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대상에서 제주도가 제외됨으로써 제주도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투자 혹은 출자한 공공기관들은 어느 자리에 갖다 놓아도 두루 잘 쓰이는 약국집 맷돌이 아닙니다. 이전되는 공공기관들은 해당 지자체의 특성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전계획에 상통해야 하고 그래야만 튼실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치적 논리나 나눠 주기식 혹은 나눠 먹기식의 균형발전 전략은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작위적으로 10개 기관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비전 그리고 그 규모에 맞는 방식으로 재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꾸로 선 드래프트 방식으로 인해 중앙의 자원을 구멍 뚫린 시루에 퍼붓는 격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제주도는 동양의 진주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문관광단지가 거의 30년이 가까이 됐는데도 완

결되지 않고 있으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법에 명기된 국고지원 20% 인상 규정이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주도를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인식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주도는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제주도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도도 대한민국에 보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다음은 이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의원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강진·완도 지역구 이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에 국민의 식문화 개선과 건강을 증진하고 잘못된 법안으로 인하여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고충을 해소하고자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여 또다시 많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심려가 크기에 현명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에 대하여 객관·타당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찰하셔서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의원회관에서 비브리오패혈증을 법정전염병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객관·타당한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학계 및 보건의료계, 수산 및 외식산업 종사자 전문가 집단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전북 및 싱싱회 시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날 행사는 전국에서 약 20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동 행사를 주관한 본 의원도 깜짝 놀랄 만큼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부산·마산·창원·울산 등 영남권과 강릉·속초·동해 등 동해

안 지방, 인천·군산·목포에 이르기까지 서해안 지방을 막론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비브리오패혈증이 전염성이 없음에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이로 인한 관련 산업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당연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부터는 수산업과 유통업 및 관련 산업, 특히 IMF 이후 자영업에 진출한 요식업체가 다시금 생기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동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임시국회가 오늘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될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5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8도 이상 되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전국의 수산업 종사자들 및 횃집과 식당 등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스런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보건당국에서는 친절하게도 비브리오패혈증 발병 주의보를 발령할 것이며 국민들은 아예 생선회를 먹지 않는 것이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전국 30만 개의 횃집과 관련 산업은 또다시 공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염병이란 사람들에게 쉽게 옮겨가는 질병이거나 남에게서 병독이 옮는 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브리오패혈증의 경우 사람들 간에 병을 확산시키거나 패혈증균을 단 한 마리라도 먹으면 모두 발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령 인체에 들어갔다고 하여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발병하지 않습니다. 위생적으로 조리한 업소에서 생선회를 먹고 비브리오패혈증이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바닷물 속의 자연계에는 비브리오균이 약 5000여 종 들어 있으며 그중 하나가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입니다. 비브리오패혈증의 원인균인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은 담수나 저온에서는 생육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수온도가 20℃ 이상 되는 6~9월의 바닷물의 표층에서 검출될 수 있으며 17℃ 이하인 표층수에서는 잘 검출되지도 않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할 때 비브리오패혈증은 전염성이 아니며, 전염병이라 할 수가 없음은 확신합니다. 주의보 발령으로 국민들에게 생선회를

먹지 못하게 하여 예방되는 질병은 더 더욱 아납니다. 올바른 위생조리만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비브리오패혈증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한 나라는 이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생선회를 우리보다 많이 먹는 일본에서는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발령 및 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식중독을 일으키지 않도록 업소의 위생 점검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종전 후 방사능을 제거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에 수산물을 의무 급식하도록 한 바 있으며 세계적으로 초밥과 생선회의 인기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패류 생식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 일본에서 비브리오패혈증이 법정전염병이 아닌 이유는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이 전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호소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비브리오패혈증을 법정전염병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행정편의주의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보건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수산업 전반에 종사하는 국민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 안정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생선회와 관련 있는 우리의 참 먹거리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고, 우리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선진국에 갈수록 성인병이 많은 우리의 전반적인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6월 국회에서는 적시성 입장에서 꼭 처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기 늦게까지 남아 주신 여러 의원들께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제253회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국정현안 전반을 매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과거사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100여 건의 의안을 처리했습

니다.

저는 지난 4월 6일 제253회 임시국회 개회 때 지난 2월의 제252회 임시국회는 여야가 상대의 존재와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원색적인 대립과 격돌에서 벗어난 근래의 첫 회기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국회 역시 대화와 타협, 관용과 상호 존중의 기초가 잘 유지되어 원만한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17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의 발의 법률안 수가 제16대 국회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의원 발의 법률안의 가결 건수가 정부 제출안의 가결 건수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16대까지는 통과된 정부 제출 법안이 80% 이상을 차지했던 데 비해서 의원 발의 법안이 정부 발의 법안보다 앞선 이런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러한 달라진 모습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는 6월 임시국회는 제17대 국회 개원 만 1년의 시점에서 열리게 됩니다. 또 이달 31일은 지난 1948년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한 지 만 5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회의 역사가 쌓여 갈수록 우리 국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존재이어야 하고,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뇌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제안연월일 : 2005. 5. 4.

1. 조사의 목적

2005년 4월 12일,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후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그것은 정부가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다’고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개 나라와 부가합의를 한 것이 밝혀졌고, 협상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술한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며, 향후 9개국 모두와

의 협상전문이 공개된다면 더 큰 파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이와 같은 이면합의 논란이 아니더라도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약 100% 증가, 소비자 시판 30%까지 허용, 10년 후 관세화 전면개방 등 쌀 한 품목에 대한 협상내용 자체만으로도 한국 농업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 과정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여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2. 조사범위

- 쌀 협상 전 과정

3. 조사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열람.(단,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열람)

나.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 및 감정

다. 조사와 관련된 기관방문조사

라.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

마. 예비조사, 청문회 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바. 회의의 공개, 관련문서의 공개 및 조사결과 보고서의 공개범위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4. 조사대상 기관 등

가. 기관

○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나. 증인 및 참고인

○ 증인 및 참고인 등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함

5. 조사기간

- 2005. 5. 12 ~ 2005. 6. 15.(35일간)

- 청문회는 6월 13일, 14일 양일간 실시함.

- 구체적인 조사일정은 위원회에서 정함

6. 조사위원회 구성

가. 위 원 : 12인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비 고
위원장	열린우리당	조일현	
조사위원	열린우리당 (6)	신중식 신학용 이시중 이영호 조일현 최 성	간사위원 : 신중식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비 고
	한나라당 (5)	이방호 김영덕 김재원 정문헌 홍문표	간사위원 : 이방호
	비교섭단체(1)	강기갑	

나. 직 원 : 18 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	전문위원	임병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김성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심의관	성석호	
"	입법조사관	권영진	
"	"	홍진성	
"	"	박선춘	
"	"	김학배	
"	"	박종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정경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보	서호진	
"	"	오동환	
"	사 무 원	박옥서	
"	"	최윤희	
"	"	전진향	
"	"	김안희	
열린우리당	교섭단체연구위원	최도일	
한 나 라 당	교섭단체연구위원	정해용	

7. 소요경비 및 지원

-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여비·조사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의함.

8. 기타

- 상기 사항에 대한 변경, 기타 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특위위원,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교섭단체소속 당직자 및 의원 보좌진 등 관계자는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기밀유지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供託法 一部改正法律案

투표의원(189인)

찬성의원(189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민석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근식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형근	정화원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監査院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192인)

찬성의원(183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재	이계진
이광재	이군현	이근식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재오	이재웅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화영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정갑윤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화원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반대의원(6인)
 김기춘 김재원 박찬숙 이혜봉
 정형근 최경환

기권의원(3인)
 김형오 이재창 이종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체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반대의원(6인)
 김기현 서갑원 유기준 이상민
 정형근 최경환

기권의원(6인)
 김명주 김용갑 김형오 나경원
 박찬숙 정화원

○國籍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01인)

찬성의원(189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기춘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영숙	김영주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순자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홍	유승희

○集合建物の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15인)

찬성의원(206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정률	안명옥	안민석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진병현	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형근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7인)			
권영길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현애자	
기권의원(2인)			
노회찬	최순영		

○通信秘密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15인)

찬성의원(215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해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권경석	권영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영숙	김영주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재경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혜석	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정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엄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래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향숙	진병현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이 광 철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회
 이 영 순 이 용 희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중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장 경 수
 장 영 달 장 향 숙 진 병 현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형 근 정 화 원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

투표의원(215인)

찬성의원(195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조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혁 규 김 형 오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종 근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료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철 안 경 료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염 동 연 오 영 식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항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회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호 중 이 장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반대의원(18인)

김 기 현 김 덕 룡 김 명 주 김 영 춘
 김 현 미 김 형 주 나 경 원 노 영 민
 맹 형 규 문 학 진 안 상 수 이 상 민
 이 원 영 이 은 영 이 재 응 장 복 심
 정 성 호 최 규 식

기권의원(2인)

박 재 완 박 형 준

(김재원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찬성의원 195인, 기권의원 2인임)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26인)

찬성의원(212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조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환 박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숙 박 박 창 달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룬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신 상 진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룬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근 현 이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민
 이 상 배 이 이 상 열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승 희 이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인 제
 이 은 영 이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중 구
 이 주 호 이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호 응 이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중 석
 임 채 정 임 임 태 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현
 진 여 옥 전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병 국 정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정 장 선 정 종 복 정 형 근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진 영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경 환 최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연 희 최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명 숙 한 병 도
 한 선 교 허 허 천 허 태 열 홍 미 영
 홍 재 형 홍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반대의원(11인)

권 영 길 김 태 년 노 회 찬 단 병 호
 심 상 정 이 영 순 임 종 인 조 승 수

천 영 세 최 순 영 현 애 자
기권의원(3인)
 박 형 준 안 홍 준 정 화 원

**○國防·軍事施設事業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23인)**

찬성의원(208인)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교 흥 김 기 춘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조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우 남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홍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정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류 근 찬 맹 형 규
 문 병 호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재 완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희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해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송 영 선
 신 계 룬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심 재 철
 안 경 룬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양 형 일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호 중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근 식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승 희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중 구 이 해 훈
 임 인 배 임 중 석 장 경 수 장 복 심
 전 병 현 정 덕 구 정 세 균 정 형 근
 조 성 래 조 성 태 지 병 문 천 정 배
 최 병 국 최 재 성 최 재 천 최 병 도
 한 병 도 홍 미 영 황 우 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인 제 이 주 호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11인)			
권영길	김태년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임종인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기권의원(4인)			
김기현	나경원	전재희	정형근

○私立學校教職員年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21인)

찬성의원(206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재완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제세	우윤근	우제향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승수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명숙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12인)

김종인	김형주	문병호	문석호
박찬숙	심재철	오영식	우원식
이계안	이승희	이혜훈	최경환

기권의원(3인)

김현미	이미경	정화원
-----	-----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의원(229인)

찬성의원(22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정식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주승용	지병문	진수희	진영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순영
김성조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허천	허태열	현애자	홍미영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반대의원(1인)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주호영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기권의원(1인)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홍창선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근현	이미경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성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안택수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28인)

찬성의원(224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훈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병엽	안영근	안택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영 순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봉 이 해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몽 준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청 래 정 화 원 제 종 길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허 태 열 현 애 자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반대의원(2인)

박 승 환 주 호 영

기권의원(2인)

안 상 수 이 상 민

김 석 준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재 흥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흥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맹 형 규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기 춘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종 근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형 준
 배 기 선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신 계 룬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중 식 신 학 용 심 재 덕 심 재 철
 안 명 옥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택 수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향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시 민 유 인 태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안 이 군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열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용 희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한 구 이 해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몽 준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화 원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지 병 문 진 수 희
 채 수 찬 천 영 세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연 희
 최 인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반대의원(32인)

강 기 갑 권 영 길 김 기 춘 김 성 조
 김 정 권 김 종 인 김 회 정 노 회 찬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투표의원(235인)

찬성의원(196인)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재 섭 강 창 일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흥 고 진 화
 고 흥 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교 흥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문석호 박세환 배일도 손봉숙
 심상정 심재엽 안경률 안영근
 안홍준 오제세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이영순 이인영 이재오
 임종인 정문헌 정청래 조승수
 주호영 진영 천영세 최순영
기권의원(7인)
 류근찬 박희태 송영선 신상진
 유승희 이상민 홍미영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정갑윤 정덕구 정봉주 정성호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진영 천정배 최규식 최성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우여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8인)

찬성의원(167인)

강길부 강봉균 강재섭 강혜숙
 고조홍 고홍길 구논회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성조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원웅 김재윤 김재홍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창달
 배기선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병렬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학용 심재덕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홍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계안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득
 이상민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진구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반대의원(56인)

장기갑 고진화 권영길 권영세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명주
 김석준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재원 김정권 김희정
 나경원 노회찬 박계동 박세환
 박찬숙 박형준 배일도 손봉숙
 심상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홍준 유기준 윤건영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방호
 이성권 이영순 이재오 이재웅
 이종구 이혜훈 정문헌 정병국
 정의화 조승수 주호영 채수찬
 천영세 최경환 최구식 최병국
 최순영 한선교 허천 홍준표

기권의원(5인)

고경화 박재완 신상진 전재희
 진수희

○環境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24인)

찬성의원(224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광성문 구논회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승희	유시민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영세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안(대안)

투표의원(220인)

찬성의원(218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경화	고조흥	고진화	고홍길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안민석	안상수	안경률	안명옥
안홍준	양승조	안영근	안택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오영식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우윤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승희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유정복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호중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계안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근식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목희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상득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성권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용희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인기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재웅
이진구	이호웅	이화영	이주호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인배
임종인	장복심	임태희	임태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여 옥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문 헌 정 병 국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화 원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영 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광 원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홍 미 영 홍 재 형

반대의원(2인)

이 혜 훈 최 경 환

안 민 석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안 흥 준 양 승 조 엄 호 성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우 제 항 유 기 준 유 재 건 유 정 복
 유 필 우 윤 건 영 윤 원 호 윤 호 중
 이 경 숙 이 경 재 이 계 경 이 계 안
 이 계 진 이 광 철 이 균 현 이 근 식
 이 기 우 이 낙 연 이 명 규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경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석 현 이 성 구 이 성 권 이 승 희
 이 시 종 이 영 호 이 용 회 이 원 영
 이 윤 성 이 은 영 이 인 기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응 이 재 창
 이 종 결 이 종 구 이 주 호 이 진 구
 이 해 봉 이 혜 훈 이 호 응 이 화 영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종 인 임 채 정
 임 태 희 장 경 수 장 복 심 장 영 달
 장 윤 석 장 향 숙 전 병 헌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덕 구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봉 주 정 성 호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종 복 정 진 석 정 청 래 정 화 원
 조 경 태 조 성 래 조 성 태 조 승 수
 조 일 현 조 정 식 주 승 용 주 호 영
 지 병 문 진 수 희 진 영 채 수 찬
 천 정 배 최 경 환 최 구 식 최 규 식
 최 병 국 최 성 최 순 영 최 연 희
 최 인 기 최 재 성 최 재 천 최 철 국
 한 병 도 한 선 교 허 천 홍 미 영
 홍 재 형 홍 준 표 홍 창 선 황 우 여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0인)

찬성의원(220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광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순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한 길 김 혁 규
 김 현 미 김 형 오 김 형 주 김 효 석
 김 희 선 김 희 정 나 경 원 노 영 민
 노 응 래 노 현 송 노 회 찬 단 병 호
 류 근 찬 맹 형 규 문 석 호 문 학 진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계 동 박 명 광
 박 병 석 박 상 돈 박 세 환 박 승 환
 박 영 선 박 재 완 박 찬 숙 박 창 달
 박 형 준 박 회 태 배 기 선 배 일 도
 백 원 우 변 재 일 서 갑 원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재 관 서 혜 석 선 병 렬
 손 봉 숙 신 계 룬 신 국 환 신 기 남
 신 상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덕
 심 재 엽 심 재 철 안 경 룬 안 명 옥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17인)

찬성의원(217인)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봉 균 강 성 종
 강 혜 숙 고 경 화 고 조 홍 고 진 화
 고 흥 길 공 성 진 광 성 문 구 논 회
 권 경 석 권 영 길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광 원 김 기 춘 김 기 현
 김 낙 순 김 덕 룡 김 동 철 김 명 자
 김 명 주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석 준 김 성 곤 김 성 조
 김 애 실 김 양 수 김 영 덕 김 영 숙
 김 영 주 김 영 춘 김 용 갑 김 원 응
 김 재 원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부
 김 종 인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진병헌	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허천우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투표의원(219인)

찬성의원(219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희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연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이경재	이계경	이계진	이광철
정청래	정화원	조경태	조성래	이근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이상득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의원(225인)

찬성의원(219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공성진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원웅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시민

반대의원(4인)

고홍길 김기춘 김용갑 이상배

기권의원(2인)

김재원 김형오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27인)

찬성의원(227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채수찬
주천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28인)

찬성의원(225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해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혜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연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기권의원(3인)

김낙순 김병호 박계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의원(227인)

찬성의원(211인)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공성진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희태 배기선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주호 이해봉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덕구
 정두연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이화영 임인배 임종인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덕구
 정두연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반대의원(13인)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배일도 심상정 엄호성 이영순
 이종구 이해훈 정갑윤 조승수
 최순영

기권의원(3인)

김애실 김정부 박형준
 (김무성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227
 인, 찬성의원 211인임)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의원(220인)

찬성의원(220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광성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정부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대환
 김학송 김한길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영호
 이승희 이시종 이윤성 이은영
 이용희 이원영 이재오 이재웅
 이인영 이인제 이주호 이해봉
 이재창 이종구 이화영 임인배
 이혜훈 이호웅 이태희 장경수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병현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정 정중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천 최교영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미영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우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

○투명사회협약 실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의원(211인)

찬성의원(211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중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고광성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웅 김재원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종률
 김태환 김학송 김한길 김태홍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회찬
 단병호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박명광 박병석
 박상돈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옥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유기준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영호 이윤성 이은영 이용희
 이원영 이재오 이재웅 이인영
 이인제 이주호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태희 장경수 임인배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병현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정 정중복 정진석
 정청래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재형
 홍준표 홍창선 황우여
 (손봉수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211인, 찬성의원 211인임)

○야스쿠니신사의한국인합사취하및일본각료등의야
 스쿠니신사참배중단을촉구하는대한민국국회결의
 안

투표의원(228인)

찬성의원(225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광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주 김영춘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이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기권의원(3인)

김용갑 김형오 박승환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대안)

투표의원(231인)

찬성의원(229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원기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종률	김종인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영선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경숙	이경제	이계경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이상배	이상열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종걸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의화	정장선
정중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제종길	조경태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진수희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기권의원(2인)

김재원 박재완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투표의원(226인)

찬성의원(198인)

강기갑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용갑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김정권	김정부
김종률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효석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심상정	안경률
안택수	엄호성	우원식	유기준
유필우	이강두	이계안	이군현
이상경	이석현	이시종	이원영
이인제	이종걸	이해봉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구논회	권경석	권영길	권영세
안민석	안상수	안택수	안홍준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제세	김기현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항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유인태	유정복	윤건영	윤원호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이강두	이경숙	이경재	이계경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이계진	이광철	이균현	이근식	김원기	김원웅	김재원	김재윤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김정권	김정부	김종률	김종인
이방호	이병석	이상경	이상득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이상배	이석현	이성구	이성권	김태환	김학송	김혁규	김현미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용희	김형오	김형주	김효석	김희선
이원영	이윤성	이인기	이인영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응래
이인제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노현송	노회찬	류근찬	맹형규
이종구	이주호	이진구	이해봉	문석호	문학진	민병두	박계동
이혜훈	임인배	임종석	임종인	박근혜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임태희	장경수	장윤석	전여옥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정문헌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배기선	배일도	변재일	서갑원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서병렬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정청래	정화원	조경태	조성태	신병렬	손봉숙	신계륜	신국환
조승수	조일현	주승용	진수희	신기남	신상진	심상정	심재덕
진영	채수찬	천정배	최경환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민석
최구식	최규식	최병국	최성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안홍준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오영식
최재천	최철국	한병도	한선교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허천	허태열	홍미영	홍재형	우제항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홍준표	황우여			유승민	유시민	유인태	유재건

반대의원(16인)

김영주	김영춘	김현미	김형주
김희선	노응래	서혜석	윤호중
이광재	이종걸	이호웅	이화영
장복심	장향숙	조정식	한광원

기권의원(12인)

구논회	김종인	박영선	신기남
안영근	오영식	유재건	유필우
이계안	임채정	제종길	조성래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대안)

투표의원(230인)

찬성의원(230인)

강기갑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홍길	공성진	곽성문

김기현	김동철	김문수	김성조	김영숙	김원기	김정권	김춘진	김태환	김형오	김희정	노현송	문석호	박근혜	박승환	박찬숙	배기선	서병렬	신기남	심재엽	안상수	양승조	오제세	우제항	유승민	유정복	윤호중	이계경	이광철	이낙연	이병석	이상열	이시종	이원영	이인제	이종걸	이해봉	임인배	임태희	장향숙	정갑윤	정병국
김명자	김병호	김애실	김영주	김원웅	김정부	김충환	김학송	김형주	나경원	노회찬	문학진	박명광	박영선	박창달	배일도	서상기	손봉숙	신상진	심재철	안영근	양형일	우상호	원혜영	유시민	유필우	이강두	이계안	이균현	이명규	이상경	이성구	이영순	이윤성	이재오	이종구	이혜훈	장경수	전병헌	정덕구	정봉주	
김명주	김부겸	김양수	김영춘	김재원	김종률	김태년	김혁규	김효석	노영민	류근찬	민병두	박상돈	박재완	박형준	변재일	서재관	신계륜	심상정	안경률	안택수	엄호성	우원식	유기준	유인태	윤건영	이경숙	이계진	이근식	이목희	이상득	이성권	이영호	이인기	이재웅	이주호	이호웅	장복심	전여옥	정두언	정성호	
김덕룡	김석준	김영덕	김용갑	김재윤	김종인	김태홍	김현미	김희선	노응래	맹형규	박계동	박세환	박종근	박희태	서갑원	서혜석	신국환	심재덕	안민석	안홍준	오영식	우윤근	유기홍	유재건	윤원호	이경재	이광재	이기우	이방호	이상배	이승희	이용희	이인영	이재창	이진구	이화영	임채정	장윤석	전재희	정문헌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화원 정제종 정조성 정조성
 조성태 조승수 조일현 정정식
 주승용 주호영 조진영 채수찬
 천정배 주최경 조진영 채규식
 최병국 최최성 최순영 최연희
 최인기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최한선 교천
 허태열 한애자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한황우

안홍준 양승조 양형일 엄호성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혜
 유원식 유윤근 유제항 유원혜
 유기준 유기홍 유승민 유승희
 유시준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유건영 유원호 유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광재
 이계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광철 이명규 이목희 이상득
 이방호 이병석 이상열 이석현
 이상민 이성권 이승희 이시종
 이영순 이영호 이용희 이원영
 이윤성 이은영 이인기 이인창
 이인제 이재오 이진구 이한구
 이종봉 이혜훈 이호웅 이화영
 임배희 임종석 임종인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장윤석 장향숙 전병현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두언
 정몽준 정문현 정병국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종복 정진석 정청래 정형근
 조성래 조성태 조승수 조배숙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진영채 최수찬 최규식
 천정배 최경환 최순영 최연희
 최병국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태열 한애자 홍문표
 홍미영 홍재형 홍준표

○出席議員(273人)

강기갑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성종 강재섭 강창일 강혜숙
 고경화 고조홍 고진화 고흥길
 고성진 곽성문 구논희 권경석
 권선택 권영길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김교홍 김기춘
 김기현 김낙성 김낙순 김덕규
 김덕룡 김동철 김명자 김명주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부겸
 김석준 김성곤 김성조 김애실
 김양수 김영덕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용갑 김우남 김원기
 김원웅 김재경 김재원 김재윤
 김재홍 김정권 김진표 김춘진
 김충환 김태년 김태홍 김태환
 김학송 김형오 김형주 김혁규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노회찬 단병호
 류근찬 문맹희 문병호 문석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계동
 박근혜 박기춘 박명광 박승환
 박영선 박재완 박종근 박찬숙
 박창달 박형준 박희태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갑원
 서병수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손봉숙 송영선 신계륜
 신국환 신기남 신상진 신중식
 신학용 심상정 심재덕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명욱 안민석
 안병안 안상수 안안영 근안택

○出張議員(2人)

정의용 황진하

○請暇議員(17人)

김근태 김선미 김홍일 남경필
 박성범 박찬석 김송영 길우제
 원희룡 유선호 이규택 이정일
 이종걸 정동채 주성영 최용규
 한화갑

○出席國務委員

부 총 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표
법 무 부 장 관 김 승 규
환 경 부 장 관 광 결 호
노 동 부 장 관 김 대 환

○出席政府委員

국 방 부 차 관 유 호 일

【報告事項】

○特別委員長 選任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 원 장 조 일 현
(5월4일)

○特別委員 選任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열린우리당
신 중 식 신 학 용 이 시 중 이 영 호
조 일 현 최 성
한나라당
김 영 덕 김 재 원 이 방 호 정 문 현
홍 문 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강 기 갑
(5월4일)

○幹事 選任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 규명을 위한 국 정조사특별	신중식	열린우리당
	이방호	한나라당

(5월4일)

○幹事 改選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미래전략특별	이인영	열린우리당

(5월4일)

○議案 提出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현 의원 대표
발의)

(5월3일 권철현·고홍길·김영선·김용갑·김
정훈·김희정·남경필·박창달·박형준·엄
호성·원희룡·유기준·이성권·조경태 의원
발의)

教育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
의)

(5월3일 김영숙·안경률·안명옥·이해봉·엄
호성·김재경·안상수·김충환·정병국·배
일도·허천·지병문·김기현·정의화·이병
석·황진하·진수희·이군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교육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5월3일 김정훈·고진화·고홍길·김부겸·김
애실·남경필·박승환·박형준·신국환·안
경률·엄호성·이병석·이성권·이혜훈·임
태희·정병국·정화원·최구식·허태열·홍
준표 의원 발의)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겠음

政治資金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5월3일 민병두·이상민·강기정·노웅래·윤
호중·정청래·이은영·김원웅·유승희·선
병렬·이경숙·이광철·김재운 의원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兵役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월3일 국방위원장 제출)

環境政策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最低賃金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5월3일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射倂行爲等規制및處罰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서재관
의원 대표발의)

(5월3일 서재관·김태홍·이윤성·박재완·엄
호성·이시중·이영호·최인기·노현송·오
제세·김종률·이인기황우여·허태열·백원
우·이원영·문학진·이혜훈·정성호·서혜
석·제종길·안병엽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 및 대한민국
독도영유권 수호 결의안(대안)

(5월3일 통일외교통상위원장 제출)

建築法 일부개정법률안(안택수 의원 대표발의)

(5월3일 안택수·엄호성·김정부·최인기·김
재원·박재완·이명규·김병호·김태환·이
해봉·서혜석·이인기·안병엽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택수 의원 대표
발의)

(5월3일 안택수·엄호성·김정부·최인기·김
재원·박재완·이명규·김병호·김태환·이
해봉·이시중·이인기·안병엽 의원 발의)

이상 2건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스포츠산업 진흥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5월3일 안민석·강기정·강성종·김덕규·김원웅·김재윤·김태홍·김한길·김희선·노웅래·민병두·배기선·신기남·오영식·우상호·우윤근·윤원호·이광철·이미경·이시중·이인기·정청래 의원 발의)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상 2건 5월3일 교육위원장 제출)

監査院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集合建物の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通信秘密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5월4일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명사회협약 실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5월4일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5월4일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

○議案 審査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2004년6월25일 이상배·권경석·권오을·김광원·김용갑·김재원·김정부·김태환·박홍수·신국환·안경률·이인기·정병국·최경환 의원 발의)

國籍法中改正法律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2일 홍준표·이근현·배일도·황진하·유정복·박종근·김재경·박순자·이인기·이상득·김문수·이윤성·이시중·정성호·김정훈·임태희·이재오·박성범·박계동·서병수·송영선·이해봉·김석준·김재윤·장복심·권영세·정문헌·박창달·최병국·홍문표·정종복·황우여·고홍길·김맹곤·김재원·박재완·이명규·박혁규 의원 발의)

供託法 一部改正法律案(박세환 의원 대표발의)

(3월30일 박세환·이인기·황우여·이해봉·김충환·안상수·박재완·유기준·박계동·유정복·김재원·정문헌·엄호성·이혜훈·배일도·홍창선·이근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

(2004년11월8일 정부 제출)

監査院法中改正法律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5일 김재경·유승민·김석준·임태희·최구식·김양수·신학용·노회찬·고홍길·이성권·권영세 의원 발의)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

(2004년9월3일 양형일·류근찬·염동연·오제세·현애자·노영민·주승용·박재완·임종석·원혜영·천영세·이철우·김재원·심재덕·이상락·신중식·우상호·문석호·고진화·노현송·최인기·김태홍·백원우·오영식·김희선·김태년·강혜숙·노웅래·안상수·강기정·신국환·박영선 의원 발의)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3일 권영세·전재희·박성범·유승민·전여옥·황우여·김재원·임태희·이재오·박재완·박찬숙·진수희·정두언·이계경·김희정·박종근 의원 발의)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진영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6일 진영·박재완·정의화·유기준·정병국·황진하·고경화·박근혜·김원웅·김재윤·안상수·고홍길·전여옥·권경석·이계경·이해봉·이원영·이윤성·이재오·엄호성·강재섭·이시중·서상기·박계동·이철우·김희정·이인기·맹형규·신중식·김영덕·김석준·정종복·나경원·유정복·이주호·김문수·박찬숙·황우여·송영선·한병도·류근찬 의원 발의)

通信秘密保護法中改正法律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22일 노회찬·권영길·김원웅·김재윤·강기갑·단병호·백원우·심상정·안상수·엄호성·유승민·이영순·임종인·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이상 6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야스쿠니신사의한국인합사취하및일본각료등의야스쿠니신사참배중단을촉구하는대한민국국회결의안

(2004년12월7일 강창일·강기정·강기갑·강혜숙·고진화·권영길·권오을·김기석·김동철·김맹곤·김영춘·김우남·김원웅·김

재윤·김재홍·김태홍·김홍일·김희선·남경필·노현송·노회찬·단병호·문병호·문학진·민병두·박기춘·박찬석·배일도·백원우·복기왕·서갑원·송영길·신기남·신중식·신학용·심상정·심재덕·안민석·양승조·양형일·염동연·오영식·우원식·우윤근·우제항·원혜영·원희룡·유기홍·유선호·유승희·유인태·유재건·이경숙·이기우·이목희·이상락·이상열·이시중·이영순·이인영·이호웅·이화영·임종석·임종인·장향숙·정성호·정청래·제종길·조경태·조배숙·조성래·조승수·천영세·최규식·최순영·최용규·최재성·현애자·홍미영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일본정부의 독도관련 망언 규탄 및 대한민국 독도 영유권 수호 결의안

(2월28일 최성·유선호·김성곤·송영길·이종걸·이석현·이화영·박영선·염동연·강기정·노현송·강창일·정청래·전병헌·이시중·이은영·김태홍·안민석·홍창선·우제항·이원영·지병문·김동철·고진화·박계동·박재완·박창달·이상득·이재오·정문헌·조승수·손봉숙·김효석 의원 발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 촉구결의안

(3월16일 강재섭 의원 외 117 인 발의)

일본국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결의안

(3월18일 천영세·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조승수·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일본국 시마네현 의회가 제정한 독도의 날 조례폐기 등 촉구결의안

(3월18일 문희상·김덕규·강기정·강성종·강창일·강혜숙·공성진·권철현·김교홍·김낙순·김맹곤·김명자·김부겸·김성곤·김영숙·김영주·김우남·김원웅·김정훈·김재윤·김종률·김태홍·김혁규·김희선·노웅래·류근찬·문병호·문석호·문학진·민병두·박기춘·박명광·박병석·박영선·박창달·배기선·박희태·백원우·서갑원·서재관·선병렬·손봉숙·신계륜·신국환·신학용·심재덕·안병엽·안상수·양승조·양형일·우제항·원희룡·유시민·유인태·유정복·윤원호·이강래·이경재·이규택·이광재·이광철·이낙연·이상경·이시중·

이은영·이인기·이철우·이혜훈·장복심·전병헌·정두언·정성호·정장선·조일현·주승용·최성·최재성·허천·황우여·최인기·유기홍·홍재형·고진화 의원 발의)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

(3월24일 신국환·김광원·최경환·이해봉·최인기·임인배·박종근·이명규·김효석·이상배·권오을·이인기·김양수·정종복·윤건영·김태환·이상득·김종률·이병석·우제창·김재원·김성조 의원 발의)

(이상 5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보고

國防·軍事施設事業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3월16일 정부 제출)

(수정하여 의결)

兵役法中改正法律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27일 권영세·김재원·박재완·염동연·이해봉·이계진·정성호·정병국·서병수·이재오·정문헌·이원영·이윤성·엄호성·이인기·나경원·정종복·이계경·정두언·황우여·유승민·이근현·이시중·김영춘·허천·이근식 의원 발의)

兵役法 一部改正法律案(고진화 의원 대표발의)

(2월4일 고진화·공성진·김원웅·김재윤·박계동·안병엽·엄호성·이근식·이인기·정성호 의원 발의)

兵役法 一部改正法律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월25일 전병헌·염동연·노현송·이시중·김태홍·정성호·서혜석·유시민·우제창·김낙순·이상경·김재홍·박기춘·신중식·유선호·이근식·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국방위원장 보고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1일 지병문·조배숙·구논희·백원우·복기왕·유기홍·이인영·정봉주·최재성·이낙연·최철국·이상열·양형일·최규성·김홍일·홍미영·강기정·김맹곤·이강래·이철우·최규식·김효석·김우남·김태홍·송영길·김동철·염동연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2004년6월23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발의)

(2004년6월18일 정성호 의원 외 10인 발의)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발의)

(2004년6월18일 정성호 의원 외 10인 발의)

高等教育法中改正法律案(이상락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25일 이상락 · 강기정 · 김교홍 · 김석준 · 김춘진 · 김태년 · 문병호 · 복기왕 · 우상호 · 유필우 · 이상경 · 이종걸 · 이철우 · 이해봉 · 장복심 · 장향숙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04년10월2일 최재성 · 구논회 · 정봉주 · 유기홍 · 복기왕 · 백원우 · 이인영 · 조배숙 · 지병문 · 최순영 · 권철현 · 이근현 · 김영숙 · 안상수 · 박창달 · 정몽준 · 진수희 의원 발의)

병역의무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2004년8월7일 이주호 · 강기갑 · 고진화 · 권경석 · 권영길 · 김기현 · 김덕규 · 김명자 · 김명주 · 김무성 · 김성곤 · 김원웅 · 김재경 · 김진표 · 김충환 · 김홍일 · 김희선 · 노회찬 · 단병호 · 유근찬 · 박계동 · 박세환 · 박승환 · 박재완 · 박희태 · 배일도 · 선병렬 · 신국환 · 심상정 · 심재철 · 안경률 · 안영근 · 안택수 · 엄호성 · 오시덕 · 유기준 · 유승민 · 유재건 · 유정복 · 윤건영 · 이광철 · 이규택 · 이기우 · 이시종 · 이영순 · 이인기 · 이재웅 · 이종구 · 임종인 · 임채정 · 장영달 · 전병현 · 정몽준 · 조정태 · 조성태 · 조승수 · 주승용 · 최순영 · 현애자 · 황진하 의원 발의)

私立學校教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이근현 의원 대표발의)

(2004년10월27일 이근현 · 안택수 · 엄호성 · 박세환 · 안상수 · 김영덕 · 윤건영 · 진수희 · 정성호 · 정종복 · 이인기 · 정두언 · 김충환 · 노웅래 · 이상득 의원 발의)

私立學校教職員年金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6일 김영숙 · 박재완 · 안명옥 · 안상수 · 엄호성 · 이근현 · 이덕모 · 유기홍 · 최경환 · 한병도 · 현애자 · 배일도 · 박창달 · 정봉주 · 이인영 · 복기왕 · 백원우 · 구논회 · 이

계진 의원 발의)

私立學校教職員年金法 一部改正法律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월4일 유기홍 · 이인영 · 구논회 · 최재성 · 복기왕 · 이재오 · 이미경 · 정봉주 · 김재홍 · 노현송 · 김재윤 · 선병렬 의원 발의)

국사교과의 필수과목체택 등 국사교육 강화 촉구결의안

(2월28일 김영숙 · 고경화 · 고흥길 · 권오을 · 김문수 · 김학송 · 김희정 · 박계동 · 박세환 · 박순자 · 박찬숙 · 박창달 · 배일도 · 안경률 · 안명옥 · 안상수 · 유기준 · 유기홍 · 이경재 · 이재오 · 진영 · 허천 · 권경석 · 안택수 · 황진하 의원 발의)

학교교육 및 국가고시 등에서의 국사과목 비중제고 촉구결의안

(3월24일 박성범 의원 외 20인 발의)
(이상 7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2건 교육위원장 보고

勤勞基準法 一部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3월28일 이목희 · 김춘진 · 최재성 · 천정배 · 정두언 · 장복심 · 박순자 · 선병렬 · 강혜숙 · 김충환 · 백원우 · 이종걸 · 제종길 · 김형주 · 우원식 · 장향숙 · 주승용 · 염동연 · 우제창 · 유승희 · 김재홍 · 홍미영 · 최성 · 김한길 · 노현송 · 김애실 · 이경숙 · 이은영 · 신중식 · 이해훈 · 이해봉 · 이근식 · 손봉숙 · 김영춘 의원 발의)

雇傭保險法 一部改正法律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3월28일 이목희 · 김춘진 · 최재성 · 천정배 · 정두언 · 장복심 · 이해훈 · 선병렬 · 강혜숙 · 김충환 · 백원우 · 이종걸 · 제종길 · 김형주 · 우원식 · 장향숙 · 주승용 · 염동연 · 우제창 · 유승희 · 김재홍 · 홍미영 · 최성 · 김한길 · 노현송 · 김애실 · 이경숙 · 이은영 · 신중식 · 안병엽 · 이근식 · 손봉숙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3월28일 이목희 · 김춘진 · 최재성 · 천정배 · 정두언 · 장복심 · 박세환 · 선병렬 · 강혜숙 · 김충환 · 백원우 · 이종걸 · 제종길 · 김형주 · 우원식 · 장향숙 · 주승용 · 염동연 · 우제창 ·

유승희 · 김재홍 · 홍미영 · 최성 · 김한길 · 노현송 · 김애실 · 이경숙 · 이은영 · 신중식 · 안병엽 · 이해훈 · 이근식 · 손봉숙 · 박순자 · 김영준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

(3월23일 박승환 · 유기준 · 이철우 · 김재원 · 이해봉 · 엄호성 · 김석준 · 이성권 · 김명주 · 정문헌 · 박형준 · 신중식 · 서병수 · 진수희 · 한화갑 · 고경화 · 원희룡 · 안상수 · 김효석 · 정두언 · 제종길 · 박계동 · 정병국 · 배일도 · 공성진 · 김형주 · 장복심 의원 발의)

障碍人雇傭促進및職業再活法中改正法律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4일 우원식 · 구논회 · 김영주 · 김형주 · 노영민 · 심재덕 · 이상호 · 유기홍 · 유승희 · 윤호중 · 이목희 · 이용희 · 이인영 · 이화영 · 장복심 · 전병헌 · 제종길 · 조정식 · 최규성 · 최재성 · 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6일 우원식 · 김영주 · 노영민 · 단병호 · 배일도 · 이인영 · 장복심 · 조일현 · 조정식 · 제종길 · 최규성 의원 발의)

環境政策基本法中改正法律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24일 김교홍 · 이호웅 · 이윤성 · 김용갑 · 한광원 · 이기우 · 신학용 · 한병도 · 조승수 · 이철우 · 박순자 의원 발의)

環境政策基本法 一部改正法律案

(2월17일 정부 제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김맹곤 의원 대표발의)

(2004년7월19일 김맹곤 · 김원웅 · 안민석 · 장경수 · 박영선 · 김영주 · 조일현 · 윤호중 · 김교홍 · 조경태 · 강길부 · 구논회 · 정장선 · 유시민 · 오영식 · 박상돈 · 신학용 · 이상민 · 김석준 · 최인기 · 제종길 · 김양수 · 김충환 · 김우남 · 정성호 · 심재덕 · 안상수 · 노웅래 · 이상락 · 노현송 · 이계경 · 이원영 · 김형주 · 신중식 · 박찬석 · 진수희 · 김태홍 의원 발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군현 의원 발의)

(2004년8월6일 이군현 의원 외 17인 발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5일 이호웅 · 서재관 · 신학용 · 김태홍 · 임종석 · 엄호성 · 이재오 · 최인기 · 김원웅 · 노영민 · 강혜숙 · 안상수 · 주승용 · 김덕규 · 유시민 · 이원영 · 이상락 · 김영준 · 황우여 · 심재덕 · 신중식 · 김교홍 의원 발의)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월24일 정부 제출)

最低賃金法 一部改正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월2일 단병호 · 강기갑 · 권영길 · 노회찬 · 심상정 · 이영순 · 조승수 · 천영세 · 최순영 · 현애자 의원 발의)

最低賃金法 一部改正法律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월2일 조정식 · 김부겸 · 김영주 · 백원우 · 이목희 · 우원식 · 제종길 · 김형주 · 장복심 · 이화영 의원 발의)

(이상 9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4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김맹곤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19일 김맹곤 · 김원웅 · 노영민 · 엄호성 · 이윤성 · 이재오 · 이해봉 · 장경수 · 정성호 · 최재성 · 허천 · 홍창선 · 오시덕 · 안병엽 · 김양수 · 오제세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1월14일 권영세 · 엄호성 · 유승민 · 박세환 · 정병국 · 이인기 · 이해훈 · 오제세 · 김애실 · 이상득 · 장복심 의원 발의)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一部改正法律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

(1월24일 박순자 · 엄호성 · 이해봉 · 유승민 · 박성범 · 이근식 · 안병엽 · 이해훈 · 안택수 · 박혁규 · 정병국 · 박세환 · 박재완 · 김정훈 · 이인기 의원 발의)

(이상 3건 폐기하기로 의결)

주택법중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04년11월25일 김동철 · 신중식 · 양형일 · 김태홍 · 강기정 · 노영민 · 김원웅 · 지병문 · 김기석 · 김영주 의원 발의)

주택법중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04년12월29일 김태환 · 이인기 · 유정복 · 김재원 · 신국환 · 안병엽 · 임인배 · 박순자 · 이해훈 · 박혁규 · 김병호 · 권영세 · 이철우 · 오

시덕·엄호성·이시중·박성범·김맹곤·최
인기·황우여·안택수·김학송·안홍준·이
윤성·정갑윤·허천 의원 발의)

不動産仲介業法改正法律案

(2004년8월2일 정부 제출)

不動産仲介業法中改正法律案(허천 의원 대표발의)

(2004년8월17일 허천·김양수·박세환·김석
준·심재철·이인기·박승환·안택수·윤건
영·진수희·이재오·유승민·정종복 의원 발
의)

**不動産仲介業法中改正法律案(장경수 의원 대표발
의)**

(2004년11월1일 장경수·조경태·김우남·송
영길·박상돈·임종인·이호용·김동철·장
복심·김낙순·김낙성·우제창·김태년 의원
발의)

**不動産仲介業法中改正法律案(정장선 의원 대표발
의)**

(2004년11월4일 정장선·김동철·주승용·김
교홍·유필우·이강래·김부겸·이낙연·조
경태·이호용·이윤성·노영민·김맹곤 의원
발의)

**不動産仲介業法中改正法律案(김맹곤 의원 대표발
의)**

(2004년11월8일 김맹곤·지병문·조경태·엄
호성·한병도·김종률·구노희·박홍수·우
제창·김원웅·황우여·박찬숙·김한길 의원
발의)

**不動産仲介業法中改正法律案(김영춘 의원 대표발
의)**

(2004년11월10일 김영춘·김덕규·김원웅·김
현미·김태년·노영민·노현송·백원우·신
중식·안택수·양형일·이근식·정청래·조
경태 의원 발의)

(이상 8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請願 提出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 수정
에 관한 청원**

(2005년5월3일 경기 구리시 수택동 273-4 서
진해 외 30인으로부터 김영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

교육위원회에 회부하겠음

○書面質問書 提出

제주관광진흥방안 등에 관한 질문서

입시제도 개혁, 대학교육 지원방안 등에 관한 질문
서

교정기관의 안정적 도서수입대책 등에 관한 질문서
새마을문고 활성화, 민방위교육 개선 등에 관한 질
문서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방이양 정책 등에 관한 질문
서

실업대책 등에 관한 질문서

(이상 6건 5월3일 김재윤 의원 제출)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에 관한 질문서

(5월3일 최재천 의원 제출)